



농산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상 농산자조금 제도의 별도 법률 제정〉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01호)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47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5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13
1. 법 제정 필요성	13
2. 제정안의 체계	20
IV. 조문별 검토의견	30
1. 제명	30
2. 제1장: 총칙	32
가. 목적	32
나. 정의	34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3. 제2장: 자조금단체	45
가. 법인격	45
나. 사업	48
다. 설립 및 설립준비협의회	50
라. 정관의 기재사항	57

마. 회원	60
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6
사. 총회	67
아. 대의원회	74
자. 임원 및 이사회	77
차. 자조금 운용 · 관리 및 평가	81
카. 생산 · 유통 자율조절	91
타. 해산 및 청산	96
파. 개선 등 조치명령	106
하. 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111
4.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113
가. 자조금의 조성 및 지역자조금	113
나. 출연 또는 지원	118
다. 자조금의 재원	121
라. 자조금의 용도	123
마. 거출금의 산정기준	126
바. 거출금의 납부	129
사. 거출금 미납자 등에 대한 지원 제한	135
아. 거출금의 수납 위탁	137
자. 과오납금의 환급	141
차. 자조금회계의 구분	143
카. 공시	147

5. 제4장: 보칙	149
가. 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149
나.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153
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159
라.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5
마. 지도·감독	168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71
6. 제5장: 벌칙	175
가. 벌칙 및 양벌규정	175
나. 과태료	178
7. 부칙	185
가. 시행일	185
나. 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186
다.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188
라. 일반적 경과조치	189
마.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191
바. 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198
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0
아. 다른 법률의 개정	202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6

I.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안(제2218201호)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9.

다. 회 부 일 : 2026. 4. 10.

2. 송옥주의의원안(제2218447호)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20.

다. 회 부 일 : 2026. 4. 21.

3. 임미애의원안(제2218956호)

가. 제 안 자 : 임미애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6. 5. 13.

다. 회 부 일 : 2026. 5.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안(제2218201호)

제안이유

현행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

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제정안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의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농산자조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라.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마.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자조금단체는 국가 및 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경작 및 출하 신고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하 시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하여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되,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자조금단체의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단체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34조)

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2. 송옥주의원안(제2218447호)

제안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상기후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처하기 어려우며,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자 스스로 모인 자조금단체가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함.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은 자조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구성원들 간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품목 생산자·생산자대표를 중심으로 자조금단체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정관과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연회원의 동의와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조금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조금단체를 명실공히 품목 대표조직이자 생산자 대표조직

으로 단체 성장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원활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마.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

-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하여, 당연회원일 수 있는 자의 자조금단체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2)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는 정관과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3)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4)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정관의 변경, 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5)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단체의 사업 수행과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6)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여야 함.
- 7)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8) 자조금단체는 해산 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에 따라 총회 소집 및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해산됨.

- 9) 자조금단체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

-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자조금은 거출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 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 중심의 농산물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3. 임미애의원안(제2218956호)

제정 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생산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산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마. 자조금단체(안 제4조부터 제24조까지)

1)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2)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농업인 등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4)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5)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함.

6)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자율조절을 수행하려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7) 자조금단체는 해산사유의 발생, 회원 10분의 1 이상의 해산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해산됨.

8) 자조금단체간 정보교류 등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1)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운용·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구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4)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자조금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34조)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차.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둠(부칙 제5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법 제정 필요성

자조금(自助金)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¹⁾

현재 농식품 분야에는 ①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 ②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 및 ③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김치자조금 등의 식품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중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의 경우,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자조금 제도로써 현재 농산물 품목에는 31개, 수산물 품목에는 14개의 자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농산물 품목 농수산물자조금 현황 】

구분	농산물	자조금단체	국비지원 여부('26)
의무 자조금 (20)	인삼	(사)한국인삼협회	지원
	친환경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백합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키위	(사)한국키위연합회	
	배	(사)한국배연합회	
	파프리카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사과	(사)한국사과연합회	

1)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026. 5. 17. 확인

구분	농산물	자조금단체	국비지원 여부('26)
의무 자조금 (20)	감귤	(사)제주감귤연합회	지원
	콩나물	(사)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참외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절화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포도	(사)한국포도협회	
	마늘	(사)한국마늘연합회	
	양파	(사)한국양파연합회	
	뽕은감	(사)한국뽕은감협회	
	복숭아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차	(사)한국차자조회	
	자생란	(사)한국난재배자협회	
	블루베리	(사)한국블루베리연합회	
	밤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임의 자조금 (11)	가지	(사)한국가지생산자협의회	미지원
	오이	(사)한국오이생산자협의회	
	풋고추	(사)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	
	단감	(사)한국단감연합회	
	무배추	(사)한국무배추생산자연연합회	
	고추	(사)한국고추산업연합회	
	딸기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밀	(사)국산밀산업협회	
	버섯	(사)한국버섯생산자연연합회	지원
	논콩	(사)한국논콩자조회	
	쌀	(사)한국쌀산업연합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수산물 품목 농수산자조금 현황 】

구분	수산물	자조금단체	국비지원 여부('26)
의무 자조금 (9)	김	(사)한국김산업연합회	지원
	전복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광어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구분	수산물	자조금단체	국비지원 여부('26)
의무 자조금 (9)	송어	(사)한국송어양식협회	지원
	향어	(사)전국내수면향어양식협회	
	메기	(사)한국메기양식중앙연합회	
	관상어	(사)한국관상어협회	
	민물장어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굴	(사)한국굴수하식연합회	
임의 자조금 (5)	새우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미지원※
	미역	(사)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협회	지원
	붉은대게	(사)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바다장어	(사)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참조기	(사)제주참조기근해자망생산자협회	

※ 주: 새우자조금의 경우 거출금 납부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자조금단체의 요청으로 2026년 5월 기준 미지원 상태임

※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현재 농수산물자조금 제도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생산방식, 생산자, 유통과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자조금 제도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와 해양수산부(수산물)의 공동 소관 제도로 운영되어 신속하고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둘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라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른 한계도 지적되고 있음.

법률에서 농업인등이 비영리법인인 자조금단체에게 거출금을 납부하

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하여 조성된 자조금을 수급안정 등 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임.

또한, 신규 자조금 설치 시 우선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이중 구조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셋째, 현행법은 거출금 납부 의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자조금 제도를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의무자조금이 임의자조금보다 단체 운영이 원활하고 자립성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의무자조금 중심의 제도 운영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는 농산물에 관한 자조금을 이 법으로 정하도록 분리하여 제정하면서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수산물에 관한 자조금은 여전히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을 따르도록 함.

또한, ② 자조금단체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조금단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단체 설립부터 자조금의 조성·운용까지 모두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③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달리 임의자조금 제도를 삭제하고 의무자조금 형태로만 자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조금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 자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우려를 완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여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농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해당 품목의 농업인등 전부를 자조금단체에 의무가입시키고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조금 사업의 효과만을 누리는 무임승차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검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하나의 제도로 운용되는 농수산자조금을 분리하여 농업과 수산업에 서로 다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의자조금을 폐지하면서 의무자조금단체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의자조금단체의 경우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존속 가능성 역시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음.²⁾

또한, 의무자조금단체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농업인등 전원이 자조금단체에 의무가입됨에 따라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는 거출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자조금단체”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있어 단체의 존속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수 없으므로 설립 목적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의 자조금단체를 특수법인화하고 임의자조금을 폐지하려는 것이나, 현행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축산자조금 등의 자조금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수용 여부에 관하여는, 자조금단체의 공공성 및 재원마련의 안정성 강화 측면과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주요사항을 개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① 농산자조금 및 이를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의 법적 근거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경과조치와 존속하는 법률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② 자조금단체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엄밀하게 규정하고, 그 외에도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하는 등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에 관한 자조금 제도를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세 건의 제정안이 이미 우리 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총 여섯 건의 제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농산자조금 관련 제정안 심사 경과 】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명	심사경과		
			발의	전체회의	소위원회
2205471	김선교의원	농산자조금 구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4. 11. 12.	상정 '25. 2. 18.	계류중
2205614	이만희의원		'24. 11. 15.		
2205702	박덕흠의원		'24. 11. 19.		
2218201	윤준병의원	농산자조금 구성·운영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6. 4. 9.	미상정	-
2218447	송옥주의원	농산자조금 구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26. 4. 20.		
2218956	임미애의원		'26. 5. 13.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또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2. 제정안의 체계

세 건의 제정안은 대체로 유사한 장 구분과 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① 윤준병의원안은 5개 장 44개 조와 부칙 8개조, ② 송옥주의원안은 5개 장 45개 조와 부칙 9개 조, ③ 임미애의원안은 5개 장 44개 조와 부칙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세 건의 제정안 모두 ① 제1장(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② 제2장(자조금단체)에서는 특수법인 자조금단체의 사업, 설립절차, 정관 기재사항, 회원, 총회·대의원회, 지배구조, 자조금 운용 평가, 해산 및 청산 등을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자조금단체의 협력증진을 위한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③ 제3장(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서는 자조금의 조성 원칙(1품목 1자조금)과 그 예외, 자조금의 재원, 거출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 자조금의 회계구분 및 공시 등을 규정함.

④ 제4장(보칙)에서는 자조금단체에게 필요한 통계 등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자조금단체가 농어업경영정보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자조금제도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 제5장(벌칙)에서는 영업상 비밀 누설의 금지, 거출금 납부 의무,

공시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금지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를 규정함.

마지막으로 ⑥ 부칙에서는 법률의 시행일과 법률 제정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조 구성 및 내용을 제정안별로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세 건의 제정안의 비교 】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은 대부분 동일하나, 일부 차이가 있음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6조(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		- 차이점 ① : 송옥주의원안의 경우, 다른 제정안에 없는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 - 차이점 ② : 송옥주의원안의 경우, 다른 제정안과 달리 준용규정을 별
제6조(설립인가 등)	제7조(설립인가 등)	제6조(설립인가 등)	
제7조(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회원)	제10조(회원)	제9조(회원)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총회)	제12조(총회)	제11조(총회)	
제12조(대의원회)	제13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제13조(임원)	제14조(임원)	제13조(임원)	
제14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6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제17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비고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9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도의 조로 규정하지 않고 제4조에서 함께 규정
제19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20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19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20조(청산 등)	제21조(청산 등)	제20조(청산 등)	
제21조(준용규정)	(※제4조에 준용규정을 둠)	제21조(준용규정)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자조금의 조성)	제25조(자조금의 조성)	제25조(자조금의 조성)	- 지역자조금에 관하여, ① <u>윤준병의원안</u> 은 <u>규정하되 제25조</u> 에서 함께 규정하고, ② <u>송옥주의원안</u> 은 <u>제36조</u> 로 별도 규정하며, ③ <u>임미애의원안</u> 은 <u>규정하지 않음</u>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제31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4조(자조금회계)	
제35조(공시)	제35조(공시)	제35조(공시)	
(※제25조에 지역자조금의 근거규정을 둠)	제36조(지역자조금)		
제4장 보칙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9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0조(지도·감독)	제41조(지도·감독)	제40조(지도·감독)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비고
제5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과태료)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 에 관한 적용례) 제3조(과오납금 환급에 관 한 적용례)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자조금에 대한 경과 조치)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 에 관한 적용례) 제3조(과오납금 반환에 관 한 적용례)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자조금에 관한 경과 조치)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 에 관한 적용례) 제3조(과오납금 반환에 관 한 적용례)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자조금에 관한 경과 조치)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윤준병의원안 은 다른 법령 과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음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경우, ① 송옥주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자조금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사전업무를 수행하는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② 임미애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지역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③ 윤준병의원안은 다른 제정안과 달리 부칙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각 조문의 필요성 측면을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이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 제15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및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는 그 내용이 자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사후 운용 평가와 자체 수급안정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특수법인 자조금단체의 설립 및 운영보다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2장이 아니라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3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세 건의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에 설치된 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에 따라, 모두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다만, ①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설립·임원·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②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이 아닌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③ 현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자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이사회가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④ 거출금 납부 의무가 없는 임의자조금 제도를 삭제하여 의무자조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조금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⑤ 그 외 자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및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조금단체연합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또한, ⑥ 임미애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의 경우 동일한 품목 내에서도 출하 시기에 따라 주산지와 농업인이 구분될 수 있는 배추, 무 등의 농산물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자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있음.

이를 정리하여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을 윤준병의원안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제정안(윤준병의원안)의 비교 】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윤준병의원안	비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신 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정안 신설 내용
<신 설>	제4조(법인격) 제5조(사업) 제6조(설립인가 등)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 제정안 신설 내용 - 제정안이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여, 「민법」과는 별도로 설립 관련 조항 마련
<신 설>	제9조(회원)	- 제정안 신설 내용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총회의 설치 등)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1조(총회)	
제10조(총회의 운영)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정관으로 위임)
제12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신 설>	제13조(임원)	- 제정안 신설 내용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윤준병의원안	비고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이사회)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이사회가 수행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삭제)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제18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 제3항 및 제6항 제외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31조(자조금 운용평가)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신 설>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 제정안 신설 내용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외	제19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신 설>	제20조(청산 등)	- 제정안 신설 내용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제6항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제7항, 제8항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 중지 등)	
<신 설>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 제정안 신설 내용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제25조(자조금의 조성)	
<신 설>	- 제3항: 지역자조금 설치	- 제정안 신설 내용
제5조(출연 및 지원)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제4조(자조금의 용도)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22조(임의자조금의 설치)	<삭 제>	- 제정안 삭제 내용 (임의자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삭제)
제23조(임의자조금의 재원)		
제24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		
제25조(임의자조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윤준병의원안	비고
제26조(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3항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항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5조(공시)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신 설>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제정안 신설 내용
<신 설>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정안 신설 내용
제32조(지도·감독)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벌칙) 및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제37조(과태료)	제40조(지도·감독)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참고로, 2026년 들어 신규로 발의된 세 건의 제정안은 종래 2024년에 발의되어 이미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세 건의 제정안과 구성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종래 발의되었던 박덕흠의원안과 신규로 발의된 윤준병의원안을 각각 대표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비교하자면,

별도의 조로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규정방식의 차이가 있거나, 일부 하나의 제정안에서만 규정하는 사항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5개 장, 44개 또는 45개 조 및 부칙 8개 조로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신규로 발의된 세 건의 제정안 역시 기존에 발의된 세 건의 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제정안의 내용이나 이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래 제정안(박덕흠의원안)과 신규 제정안(윤준병의원안)의 비교 】

박덕흠의원안(제2205702호)	윤준병의원안(제2218201호)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두 건의 제정안의 구성이 동일함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 윤준병의원안은 자조금 운용 평가에 관하여 제2장에서 규정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제6조(설립인가)	제6조(설립인가 등)	
제7조(설립등기)	제7조(설립등기)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제9조(회원)	제9조(회원)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총회)	제11조(총회)	
제12조(대의원회)	제12조(대의원회)	
제13조(임원)	제13조(임원)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 제3장에서 규정)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제16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제17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제18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19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제19조(청산 등)	제20조(청산 등)	
제20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제22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 중지 등)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 중지 등)	
제23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박덕흠의원안(제2205702호)	윤준병의원안(제2218201호)	비고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4조(자조금의 조성) 제25조(출연 또는 지원) 제26조(자조금의 재원) 제27조(자조금의 용도) 제28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29조(거출금의 납부) 제30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제31조(거출금의 수납위탁)	제25조(자조금의 조성)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 박덕흠의원안은 자조금 운용 평가에 관하여 제3장에서 규정
제32조(자조금 운용 평가)	(※ 제2장에서 규정)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5조(공시)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제35조(공시)	
제4장 보칙		
제36조(지역자조금)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8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1조(지도·감독)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지역자조금을 제25조에서 규정)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0조(지도·감독)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박덕흠의원안은 지역자조금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
제5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양벌규정) 제45조(과태료)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 세건의 제정안 모두의 구성이 동일함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 윤준병의원안은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 - 박덕흠의원안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조(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IV.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①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②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려는 것임(안⁴ 제명).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과 달리 ‘자조금단체의 육성’을 제명에 포함하여 단체 육성 측면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 경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의 제명에 이미 자조금의 “운용”이 포함되고, 제정안에서도 운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고려할 때,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제명에 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보다 궁극적인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자조금의 조성·운용’과 달리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자조금단체의 육성’까지 법률의 병렬적 목적으로 삼아 제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음.

4)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윤준병의원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특히, 이러한 자조금단체의 육성에 대한 입법적 보장이 자칫 자조금 단체를 둘러싼 특수이익까지 과도하게 보장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자조금의 본래 취지 달성 및 자조금단체의 자생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소위원회에 이미 회부되어 있는 세 건의 법률안은 모두 그 제명을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있음.

2. 제1장: 총칙

가. 목적

제정안은 법률의 목적을 ① 농산물 수급 안정(원활) 및 경쟁력 제고 도모, ②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③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 은 농수산물자조금 의 조성 및 운용 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 산업자 및 소비 자의 권익을 보 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 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농산물 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 익을 보호하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 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농산물 의 수급 원활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 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 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농산물 의 품질향상과 소비촉진, 생산 자의 공동이익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 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법률의 목적을 ①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②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되, ① 농산물의 수급 안정(원활) 및 ②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③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

이 중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산물 경쟁력 제고”는 자조금의 설치 목적 및 기능과 부합하는 면이 있으며,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높은 수준의 목적일 수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으로 자조금과 관련이 있는 농산업⁵⁾의 발전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3. “농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의

제정안은 법률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 ① 농산자조금, ② 자조금 단체, ③ 농산물, ④ 농업인등 및 ⑤ 거출금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농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등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이 제5조제1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조금을 조성·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자조금단체”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농업인등이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활동으로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4.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라. 그 밖에 농수산물자조 금의 효율 적인 조성 ·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 담을 위하 여 필요하 다고 인정 되어 농수 산물의 품 목별로 농 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 하는 자 5. “의무거출금” 이란 농수산업 자가 의무적으 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 다.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5조 에 따른 사업 을 위하여 자 조금단체에 납 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5조 에 따른 사업 을 위하여 자 조금단체에 납 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거출금”이란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제5조 에 따른 사업 을 위하여 자 조금단체에 납 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수산물자조금 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인 ① 농수산물자조금, ② 자조금단체, ③ 농수산물 및 ④ 농수산업자를 정의하는 한편,

농수산물자조금 제도를 거출금 납부 의무의 유무에 따라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구분함에 따라, ① 거출금을 의무거출금과 임의거출금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② 의무농수산물자조금과 임의농수산물자조금 및 ③ 의무자조금단체와 임의자조금단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달리 농산물자조금 제도를 의무자조금 형태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므로, ① 농산물자조금, ② 자조금단체, ③ 농산물, ④ 농업인등 및 ⑤ 거출금만을 정의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제정안에 따른 정의사항 】

연번	현행법	➡	제정안	비고
1	농수산물자조금	➡	농산물자조금	- 수산물 관련 제외
2	자조금단체	➡	자조금단체	- 특수법인으로 변경
3	농수산물	➡	농산물	- 수산물 관련 제외
4	농수산업자	➡	농업인등	- 수산물 관련 및 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
5	의무거출금	➡	거출금	- 임의자조금 폐지 반영
6	임의자조금	➡	(미규정)	- 임의자조금 폐지 반영
7	의무농수산물자조금	➡		
8	임의농수산물자조금	➡		
9	의무자조금단체	➡		
10	임의자조금단체	➡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① 농산자조금, ② 농산물 및 ③ 거출금에 관하여는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준하여 규정하되 수산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④ 자조금단체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달리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서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⑤ 농업인등을 농업인, 농업법인⁶⁾⁷⁾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여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상 농수산업자에서 수산물 관련자 및 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조금단체가 보다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이 농산자조금의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농산물”은, 농산자조금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일정한 농산물 품목에 대하여 조

6)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업법인 대신 농업경영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정의되어 있어, 실제로는 현행법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성되므로 이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용어가 가리키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1호의 농산자조금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조금단체를 인용하고 있고, 제2호의 자조금단체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농산자조금을 상호 인용하고 있어 순환논리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수정하거나 제1호와 제2호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제1호의 농산자조금에 대한 정의에 있어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을 기술하면서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으로 “등”이란 불확정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조금의 용도가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안 제9조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당연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생산자단체에 일부 농업법인과 자조금단체가 포함되므로 법률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부령에 따른 생산자단체에는 농업법인⁸⁾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도 생산자단체에 해당하여 자조금단체의 회원이 자조금단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이에 제정안에서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되는 생산자단체의 유형을 별도로 열거하거나, 생산자단체의 정의에서 자조금단체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범위(안) 】

연번	유형
1	농협 및 농협중앙회
2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염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염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단체 (1)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조합공동사업법인(농식품부·산림청 인가) 및 품목조합연합회 (4) 자조금단체 (5)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정안은 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이 특별법⁹⁾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법¹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 법률은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음.¹¹⁾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이 법이 농산자조금에 관한 일반법이 됨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보충적 적용을 규정하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그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람·사항·장소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

10) 사람·사항·장소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고 적용되는 법
참고로,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1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p. 258~259.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보충적 적용과 우선적 적용 】

구분	예시	법의 성격
보충적 적용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 에 관하여 <u>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u>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반법
우선적 적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나 복지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 하여는 <u>다른 법률에 우선하여</u> 이 법을 적용한다.	특별법

※ 자료: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p. 258~259. 를 바탕으로 작성

참고로,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따르도록 하지만, “자조금단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자조금단체에 관하여는 제정안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산자조금과 달리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임.

3. 제2장: 자조금단체

가. 법인격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1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미규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 참고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①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자조금단체 제4조(법인격) 자조금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의 조직·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조금단체 자체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별도로 법인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 자조금단체가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의 공적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단체가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사(私)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함.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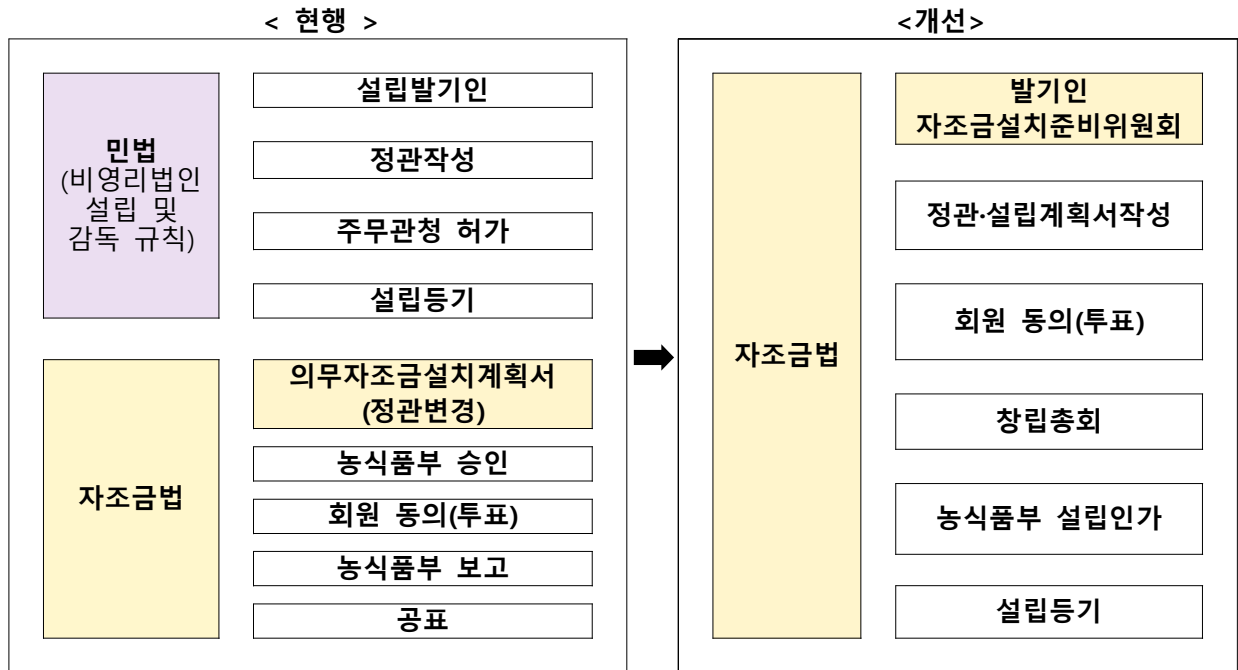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근거가 「민법」과 농수산물자조금법이라는 두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우선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등 자조금단체의 설립 과정이 복잡하고, 설립 이후 법률 적용 등에 있어서도 혼란이 우려됨.

이에 제정안은 ①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②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을 통하여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는 경우 공적 기능 수행, 거출금 납부 의무 부여 등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보다 용이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 농수축산신문, 「[사설]농산의무자조금 도입 10년, 새로운 모습이 필요할 때」, 2023. 11. 7., 2026. 5. 11. 확인, <https://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677>

【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 설립 절차 개선(안)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① 이 법에서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및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5조(사업)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상 자조금단체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이미 「민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영리아닌 사업으로 규정되어 자조금단체의 사업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¹³⁾

그런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사업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사업을 ① 이 법에서 자조금의 용도로 정한 사업과, ② 그 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제한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조금이 그 조성 목적에 맞게 공적·비영리적 사업에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수급조절 등을 목적으로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출금과 국가의 지원금 등을 통하여 재원이 조성되므로, 이를 운용하는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목적에 맞게 그 사업 범위가 제한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에서도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1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4)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 529, 542.

다. 설립 및 설립준비협의회

제정안은 창립총회의 의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등 자조금 단체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송옥주의원 안은 설립 과정에서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6조(자조금단체설 립준비협의회) ① 자조금단체를 설 립하려면 제10조 제2항에 따른 당 연회원이 될 수 있는 자 50인 이 상이 발기인이 되 어 자조금단체설 립준비협의회(이하 “설립준비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 고, 협의 및 합의 를 통하여 설립하 고자 하는 자조금 단체의 정관 및 자조금단체설립계 획을 마련하여야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한다. 이 경우 설립준비협의회는 설립하려는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정관 및 설립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당연회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조금단체 설립동의서(이하 “설립동의서”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설립준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품목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한다.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조	③ 위원장은 설립준비협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설립준비협회를 대표한다. ④ 설립준비협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선임방법 및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설립인가 등) ① 설립준비협회는 정관 및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금단체 설립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설립하려는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산물에 대한 대표성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의	조금단체 설립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설립하려는 자조금단체의 해당 농산물에 대한 대표성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설립등기) ① 자조금단체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조금단체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별도로 자조금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제정안과 같이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한다면 그 설립 절차 역시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 설립등기 등 설립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당연회원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고,

- ②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 ③ 정관 및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립을 인가받도록 하며,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대표성 측면에서 설립동의서 제출자 수를 구체화하고 현행법에 준하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그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립총회 전에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설립동의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할 뿐 설립동의서를 얼마나 제출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설립동의서 제출자가 창립총회의 재적수로 활용되며, 자조금단체가 설립되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당연회원에게 거출금 납부, 생산·유통 자율조절 참여 등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성 확인 기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연회원의 과반수로부터 설립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대표성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설립동의서 제출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 의결정족수”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¹⁵⁾과 같이 가중 의사·의결정족수로 변경하여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

15) 현행법은 의무자조금 설치 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가 있음.

둘째, 송옥주의원안에 따른 자조금단체설립준비협의회(이하 “설립준비협의회”) 설치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송옥주의원안은 사전 절차로서 설립준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정관 및 설립계획서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인 설립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설립 절차가 장기화되고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설립준비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주요사항이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준비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구체적인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등 보다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상 투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음.

라. 정관의 기재사항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미규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 참고조문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및	제9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및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자조금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권리·의무 및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4. 자산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특별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시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 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시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회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거출금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자산의 처리방법 10. 공시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여,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관하여는 「민법」 제40조가 적용됨.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법」과는 별도로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조금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¹⁶⁾

참고로,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과 함께 ① 사업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③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 관한 사항, ④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공시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을 당연회원으로 구성되고, 자조금을 운용하며, 수급조절 등 공적 성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16) 참고로,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관 기재사항을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40조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이 준용되어야 할 것임

마. 회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당연회원인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회원이 자조금단체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이 아닌 자 중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하여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이 아닌 자 중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하여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회원)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등이 아닌 자 중 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조금단체가 정관으로 그 자격을 정하여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④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출금을 납부하고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총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회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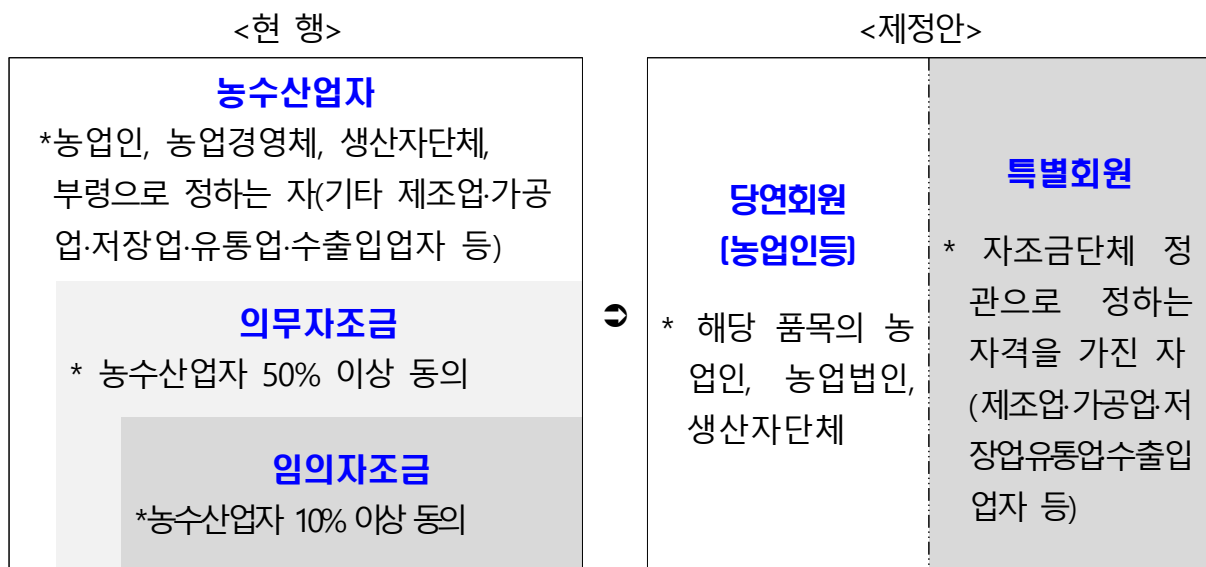
이는 현행법 구조에서는 자조금단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임에 따라,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민법」과는 별도로 회원(사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런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자조금단체의 회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으로서 ① 당연회원(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과 ② 특별회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정관의

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을 규정하고, 자조금단체의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 의무와 자조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활동에의 협조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회원 범위(안)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일부 재가공)

회원의 범위를 특정하여 모호성을 해소하고, 당연회원을 생산자인 농업인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농업인등을 모두 당연회원으로 자조금단체에 가입시키는 경우,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 활동이 해당 품목의 전체 농업인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무임승차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회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특히, 당연회원이 되는 자는 거출금 납부의무와 단체 사업에 대한 협조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한 제외 기준 없이 특정 품목의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의무적으로 자조금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회원 중 자연인이 아닌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총회에 참석하거나 대의원으로서 대의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공회의소법」은 법인의 임원이 법인을 대표하여 상공회의소의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¹⁷⁾

17)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의안번호 제2220267호)은 단체회원이나 단체대원으로 자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동 제정안은 2026.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고, 2026.7.29.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으나 2026.8.21.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제31조(단체회원·단체대의원의 대표자) ①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이나 단체대원으로 선출된 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단체회원 또는 단체대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일반대의원인 사람
3. 같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단체회원 또는 단체대원의 대표자인 사람

③ 단체회원 또는 단체대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초농어업회의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례 】

「상공회의소법」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셋째, 자조금단체가 농업인들이 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달리¹⁸⁾¹⁹⁾ 생산자단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등록 의무가 없어 농림축산

18) 현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특정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면적을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19)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에서 추가하고 있는 정보 중 “경영체 등록정보”가 있으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어떠한 품목을 재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임.

식품부가 별도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산자단체에 관한 정보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 또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생산자단체가 당연회원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 제37조(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에 자조금단체가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바.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고,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으며, 농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자조금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정안은 현행법에 준하여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조금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사 단체의 난립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사. 총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9조(총회의 설치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2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1조(총회) ① 자조금단체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1. 정관의 변경 2.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3.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및 납부면제의 기준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자 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사업계획, 자 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 인	4. 사업계획 및 자조금운용계 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자 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 인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 출금액 변경(1 0분의 2 이하 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 다)			
5. 의무자조금의 구성 및 운용 에 대한 감사	5.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 의장 및 감사 의 선출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7. 제1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 리위원회의 위 원 선출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8. 제14조제2항에 다른 의무자조 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9. 제15조에 따 른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위 원장의 해임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 부면제의 기준	※ 납부면제 기준 은 3호에 포함됨		
	7. 제17조에 따른 생산·유통자 율조절의 결정	7. 제18조에 따른 생산·유통자 율조절의 결정	7. 제17조에 따른 생산·유통자 율조절의 결정
11. 총회 운영규 정의 제정 및 개정	8. 총회 운영규 정의 제정 및 개정	8. 총회 운영규 정의 제정 및 개정	8. 총회 운영 규 정의 제정 및 개정
12. 그 밖에 의장 이 총회의 의 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 는 사항	9. 그 밖에 정관 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 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정관 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 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정관 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 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총회의 운 영)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 자 과반수의 출	③ 총회는 회장 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재	③ 총회는 회장 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회	③ 총회는 회장 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재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되는 총회를 규정하고, 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 거출금의 산정기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총회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단체의 총회와 그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 하되, ① 정관의 변경, 합병·분할 등 자조금단체의 특수법인화에 따른 사항을 신설하고, ② 그 외 제정안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며²⁰⁾,

③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에 가중 의결정족수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²¹⁾ ④ 그 외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이 아닌 정관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이 중 특수법인화에 따른 정관의 변경이나 그 외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자조금단체의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달리 거출금의 산정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거출금에 관하여는 회원에게 법률상 납부 의무가 적용되고 미납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책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경우 대표성을 증대할

20) 지출금액 변경을 총회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거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위원장 및 위원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이 해당됨

21) 자조금단체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정안 제19조에서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현행법과 같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에서 신설되는 총회 의결사항 중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의 경우, 기존 규정을 우회하여 별도의 자조금단체가 신설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합병·분할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법」상 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²²⁾와 같은 합병·분할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제정안은 특수법인인 자조금단체가 필요한 경우 총회를 거쳐 합병·분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조금단체가 총회만을 거쳐 임의적으로 자조금단체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자조금단체 설립, 품목 통합·분리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정안의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을 허용하고자 하더라도, 제정안은 물론 제정안이 준용하도록 하는 「민법」에는 합병·분할의 절차 및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법상 미비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2) 「상법」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제4장 주식회사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법인에 관한 유사 입법례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분할을 허용하면서, 별도로 합병·분할의 절차 및 요건 등(제75조~제81조)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합병의 무효에 관하여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수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한 유사 입법례: 농업협동조합법 】

「농업협동조합법」

제75조(합병) ①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려면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합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으로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의 정수(定數)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임한다.

⑤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려면 설립위원이 추천한 사람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에 관하여는 합병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조합의 합병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제77조(분할) ① 지역농협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분할 설립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아. 대의원회

제정안은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2조(대의원회)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	제13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	제12조(대의원회) ① 회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자조금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은 기간으로 한다.	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의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의 후보자의 자격, 등록 및 선거 등에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조금법은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의원의 자격,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23)24)에서 정하고 있음.

23)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① 대의원 후보자 자격을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로 하고,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함.

24)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등록 및 공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은 선거 공고일 현재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출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을 둔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② 의무자조금단체는 제4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 결원(缺員)이 된 대의원의 수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체 대의원 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정안은 현행법과 같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차이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부령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소관 부처 장관에게 선거일 30일 전까지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²⁵⁾은, 자조금단체가 개별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임.²⁶⁾

둘째, 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보궐선거 선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의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셋째, 윤준병의원안과 임미애의원안은 대의원의 자격으로서 해당 자조금단체의 “회원”일 것을 규정하여 외부 인사의 대의원 선출을 방지하고 있음. 이는 대의원회가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갈음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5)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의무자조금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려는 경우에는 대의원 선거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수, 대의원 수, 대의원회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대의원 선거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6)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대의원회 설립계획서를 단순히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할 뿐,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자. 임원 및 이사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자조금단체의 심의·의결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제14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제13조(임원) ①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수, 임기, 권한 및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제13조(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설 치) 의무자조금 단체는 의무자조 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 업 수행과 자조 금의 조성·운용 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자 조금단체에 이사 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제15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 업 수행과 자조 금의 조성·운용 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자 조금단체에 이사 회를 둔다.	제14조(이사회) ① 자조금단체의 사 업 수행과 자조 금의 조성·운용 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자 조금단체에 이사 회를 두어야 하 며, 각 자조금단 체의 정관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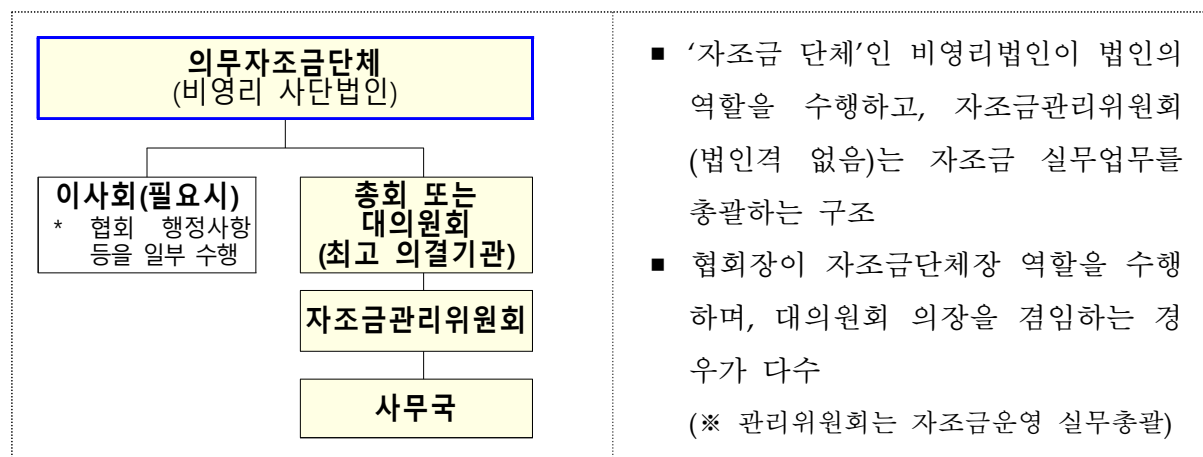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등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④ 이사회 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 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현행법상 자조금단체는 그 법적 성격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므로 이사 등의 임원을 두고 필요시에 이사로 구성된 집행기관인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민법」상의 임원과는 별도로 자조금단체에 ① 총회의 의장, 부의장 및 감사와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뒤 자조금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여, 이사회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집행기능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현행법상 자조금단체 지배구조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임원을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고, 이 중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자조금단체에 두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집행기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⁷⁾²⁸⁾ 공무원이 자조금단체 이사회의 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²⁹⁾ 및 「지방공무원법」³⁰⁾에 따른 공무원의 겸직 금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27) 이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14조제1항제2호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28)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9)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30)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차. 자조금 운용·관리 및 평가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조금 운용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자조금 운용과 관리) ①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조금운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④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지출계획은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지출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자조금	여 자조금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지출계획은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며,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조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는 자조금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 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 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자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	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지출 금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자조금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에 의무자조금의 조성, 자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자조금 운용 평가) ①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자	에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 및	에 자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자조금단체의 자조금 운용 평가 등) ① 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2년마다 받고 그 평가결 과에 대한 보고 서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하여 자조금 사 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 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관리를 위하여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하여 자조금 사 업의 계획, 집행 및 자조금의 운 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보고 서를 받은 경우 에는 이해관계 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 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2조 에 따른 개선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보고 서를 받은 경우 에는 이해관계 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 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2조 에 따른 개선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보고 서를 받은 경우 에는 이해관계 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 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2조 에 따른 개선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등 조치명령,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6조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등 조치명령,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6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등 조치명령, 제25조에 따른 자조금의 통합 및 분리, 제26조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평가업무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평가의 절차 및 내용, 평가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④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단체로 하여금 ①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포함하는 자조금운용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②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운용계획 승인 및 자조금운용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첫째, 자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기구를 총회(또는 이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고 있음.

다만, 최초의 자조금운용계획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안과 계획변경안의 의결기구를 일치시킬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자조금단체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지출 금액의 규모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로 일원화함.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령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① 주요항목의 경우 그 주요항목의 10분의 2 이하,³¹⁾ ② 주요항목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자조금 사용액(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³²⁾, 제정안은 주요항목 변경기준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하로 상향하여 총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5년마다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는 현재 대부분의 자조금이 소비·홍보 측면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업계획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품목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넷째, 자조금운용평가 실시방식을 변경하고, 자조금운용평가 결과를 조치명령이나 출연 또는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2) “농산물분야 농수산물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1호)

제18조(예산 변경) ②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간, 목간 전용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목(사업명)간 또는 세목(사업명)내에서 세부 내역간 전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산변경 및 지출금액 변경이 해당연도 자조금 사용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외부전문기관이 자조금운용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자체적으로 자조금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며, 그 평가 결과를 자조금단체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조금단체의 역량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섯째, 임미애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조금단체가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후 신속하게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카. 생산·유통 자율조절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생산·유통 자율조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1조의2(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국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정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생산·유통 자율조절) ① 자조금단체는 정부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법인·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생산·유통 자율조절”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②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농수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1. 경작 및 출하 신고 2.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3. 수출 등 유통조직 지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① 경작 및 출하 신고, ② 시장출하규격 설정, ③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단체가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총회 의결사항³³⁾으로 규정함에 따라 농수산업자의 찬성을 총회 의결로 같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여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33) 「농산물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11조(총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제17조에 따른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③ 총회는 회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정안은 대의원 3분의 2 찬성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대해 총회(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와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가 상이하여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회원이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제한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조금단체의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는 회원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 내 농산물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제한의 수준을 높인다면 법률에서 생산·유통 자율조절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유통 자율조절이 경쟁제한 효과를 통하여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유사 제도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명령하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³⁴⁾

셋째, 제정안은 수급안정 사업 중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을 단순히 유통조직 지정으로 변경하여, 유통조직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있음.

독점력을 지닌 단일 유통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요구되어 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에 지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사례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구 조정으로 유통조직이 가지는 독점력을 완화한다면, 유통조직을 지정하는 데 요구되는 합의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타. 해산 및 청산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해산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해산 시에는 자조금단체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며, 거출금 수납은 중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미규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 참고조문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19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18조(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 자조금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①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재적 농수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8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9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의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① 회원은 제18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지 요청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적농수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의 의무자조금의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 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 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자조금 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폐지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미규정)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총회의 회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회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다만,	④ 회장은 제3항에 따른 투표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청산 등) ① 자조금단체가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파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인(清算人)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開議)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으로 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산한 자조	④ 해산한 자조금	④ 해산한 자조금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	금단체의 청산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단체의 청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3조(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수납중지 등) ① 회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된 경우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회원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조금단체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거출금 수납을 중지시켜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②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	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의결되기 전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자조금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이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집행 후 남은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집행 후 남은 금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조금의 폐지와 거출금 수납중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따른 거출금 수납중지를 현행법에 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8조제3호에 따른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는 안 제11조와 연계하여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 허용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⁵⁾.

둘째, 안 제19조는 안 제18조제2호에 따른 해산사유(총회의 의결)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5) 자조금단체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산 사유에 포함될 입법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임

안 제19조는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이 전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산을 요청하면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8조제1호(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제3호(합병·분할) 및 제4호(설립인가취소)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가 당연히 해산되는 것이지, 총회에서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보이므로³⁶⁾, 이를 안 제18조제2호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통한 자조금단체의 해산 의결 절차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19조는 회원이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요청이 있는 경우에 안 제12조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해산 의결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자조금단체의 해산은 법인의 존립 그 자체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 의결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회에서도 해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1조제3항은 자조금의 폐지에 대해 대의원회에서도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넷째,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회장이 청산

36) 특히, 안 제18조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해산 사유에는 ‘총회의 의결’이 존재하여, 총회에서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의결한 경우, 회원이 서명을 받아 총회에 자조금단체의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임

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별도의 예외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서는 법인의 해산 시 청산인을 이사로 하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³⁷⁾ 특수법인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에서도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수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유사 입법례 】

「농업협동조합법」

제84조(청산인) ① 지역농협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조합장이 청산인(清算人)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개인투자조합의 해산) ③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37) 「민법」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파. 개선 등 조치명령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경과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의무자조금단체 농수산업자의 해당 농수산물 생산량, 생산액 등이 전국 생산량, 생산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이거나 의무자조금단체가 제6조제3항에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개선 등 조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따른 의무자조금 설치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자조금단체의 회원 중 거출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회원이 납부해야	2. 자조금단체의 거출률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2. 자조금단체의 회원 중 거출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는 회원이 납부해야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농산물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다만, 해당 기간 이 경과한 후에 도 개선되지 아 니하는 경우 등	하는 거출금 총액에 대하여 회원이 실제 납부한 총액의 비율(이하 “거 출률”이라 한 다)이 농림축 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기 준 미만인 경 우		하는 거출금 총액에 대하여 회원이 실제 납부한 총액의 비율(이하 “거 출률”이라 한 다)이 농림축 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기 준 미만인 경 우
	②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조 치를 명한 경 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지 원을 한 지방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조 치를 명한 때 에는 제27조에 따라 출연 또 는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에 해당 사유 의 발생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조 치를 명한 경 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지 원을 한 지방 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기간 이 경과한 후에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기간 이 경과한 후에	③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기간 이 경과한 후에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의무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 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도 개선되지 아 니하는 경우 또 는 해당 자조금 을 존치할 필요 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자조금 단체의 설립인 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도 개선되지 아 니하는 경우 등 해당 자조금을 존치할 필요성 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조금단 체의 설립인가 를 취소할 수 있다.	도 개선되지 아 니하는 경우 또 는 해당 자조금 을 존치할 필요 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자조금 단체의 설립인 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단체의 전체 농수산업자에 대한 대표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부의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간을 정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단체에 대한 출연 또는 지원 중단, 개선 조치 명령 및 설립인가 취소를 규정하되, 다음 2가지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역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조금단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확충하고 있음.

다만, 지원중단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으로 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중단을 명령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치명령 발급 기준을 ‘회원의 생산량·생산액 비중’에서 자조금 단체의 운영과 더욱 밀접한 지표인 ‘거출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조금 단체의 거출금 수납 실적을 제고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 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제정안은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4조(자조금단체연합회의 설립) ① 자조금단체는 자조금단체 간 협력사업,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자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법 제38조에 따른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우선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 품목별로 각각의 자조금단체가 운영됨에 따라 단체마다 사업의 운영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능력이 상이할 수 있음.

이에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자조금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설립하여 협력 및 정보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조금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연합회의 설립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합회에 관한 주요 사항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연합회 설립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영유아보육법」

제53조(어린이집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집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4.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가. 자조금의 조성 및 지역자조금

제정안은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②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5조(자조금의 조성) ①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목의 통합 또는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품목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2.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는 해양수산물부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 합하여야 한다.	③ 출하 시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하여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자조금의 구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정한다. 제36조(지역자조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 관리 및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 시기에 따라 주된 생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지역자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하는 1품목 1자조금 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농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품목을 분리³⁸⁾하거나 두 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규정에 준하여 1품목 1자조금의 원칙과 그 예외를 규정하되, 추가적으로 임미애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출하 시기에 따라 특정 지역 또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배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기온, 날씨 등 지리적 특성에 따라 봄·여름·가을·겨울 등 그 수확 시기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조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임.

지역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수용하는 경우, 수확 시기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농산물에 관한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지역자조금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역자조금 도입 여부는 지역단위 수급조절 및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품종이 동일한 농산물을 수확 시기(지역)별로 구분

38) 가령, 현재 화훼류는 ① 백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백합자조금과, ② 백합을 제외한 화훼를 대상으로 하는 화훼자조금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품종을 분리하고 있음

하여 전체 농업인등에 대한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은 지역자조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농산자조금과 지역자조금의 관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지역자조금을 농산자조금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경우, 안 제2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농산물을 출하 시기에 따라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³⁹⁾.

반면, 지역자조금이 농산자조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자조금 유형에 해당한다면, 지역자조금의 설치 근거 외에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지역자조금단체의 회원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회원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단순히 지역만 같으면 다른 수확 시기에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이 당연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원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⁴⁰⁾.

39) 이 경우, 안 제25조제2항에 따른 분리를 하나의 농산물을 품종별로 분리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지역자조금과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자조금과 같은 분리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음

40) 구체적으로, 지역자조금을 조성한 자조금단체의 당연회원은 해당 수확 시기에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으로 한정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수확 시기

나. 출연 또는 지원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출연 또는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정부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원 또는 출연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

에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회원이 되도록 규정할 수 있음. 단, 이때 당연회원 및 특별회원을 규정한 안 제9조와 중첩될 수 있으므로 그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대하려는 것으로 자조금단체의 육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을 ‘보조’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회 법제실의 『법제기준과 실제』에 의하면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원의 대상, 용도 등의 성질상 보조금인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방식을 ‘보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⁴¹⁾.

현재 국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조금지원(3031-325)” 사업을 통하여 자조금단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의 실질은 보조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출연 또는 보조로서 규정하는 특수법인 관련 유사 입법례 역시 존재함.

【 특수법인에 대한 지원을 보조로 규정한 유사 입법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 5. (생략)

41)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p47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다. 자조금의 재원

제정안은 자조금이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재원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의무거출금	1. 거출금	1. 거출금	1. 거출금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3.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의 재원으로 ① 거출금, ②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③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수출·수입 등과 관련된 자의 지원금 및 ④ 자조금의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을 규정함.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의 재원을 규정하되, ① 안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출연 또는 지원 주체로 추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② 농산물의 생산에 관련된 자 역시 지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금 납부 주체의 확대에 따라 자조금단체의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26조의 ‘출연 또는 지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조로 수정하는 경우에는, 안 제27조에서도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자조금의 용도

제정안은 자조금이 그 조성 목적에 맞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2.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3.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4. 회원, 소비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3.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1.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2. 제18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4. 회원, 소비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제28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2.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3. 제17조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4. 회원, 소비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 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 한 사업 및 이 와 관련된 조 사·연구	5. 유통구조 개선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활성화 사업 6. 농산물의 생 산 및 소비동 향의 파악, 품 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 한 사업 및 이 와 관련된 조 사·연구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 화 사업 6. 농산물의 생 산 및 소비동 향,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 업 및 이와 관 련된 조사·연 구	5.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 화 사업 6. 농산물의 생 산 및 소비동 향의 파악, 품 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 한 사업 및 이 와 관련된 조 사·연구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6. 자조금단체 가입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거출률 제고 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자조금 운용 및 관리에 필 요한 경비의 지출	7. 거출금 납부 율 제고를 위 한 교육 및 홍 보 8. 자조금 운용 및 관리에 필 요한 경비의 지출	7. 거출률 제고 를 위한 교육 및 홍보 8. 자조금 운용 및 관리에 필 요한 경비의 지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 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자조금의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조금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의 용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조금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되, ①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과 ② 자조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사용 용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각 수급조절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지출로서 자조금의 사용 용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자조금의 용도에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달리 외부전문기관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자조금 운용 평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성과 평가를 위하여 별도로 지출할 사항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마. 거출금의 산정기준

제정안은 자조금단체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거출금의 산정기준을 회원별 경영규모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9조(거출금의 산정기준) 자조금단체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판매액 등 회원별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거출금의 규모를 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의 한도에서 의무거출금을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현행법에 준하여 거출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되, 거출금 산정기준 및 한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장관의 승인이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서 자유로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거출금이 납부가 강제되는 일종의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거출한도,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서 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바. 거출금의 납부

제정안은 자조금단체 회원이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대납기관 등 거출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농수산업자에 대	제30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한 내에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하여는 그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의무거출금의 금액만큼 감액하여 다른 자조금단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농수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거출금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거출금 납부 및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거출금 납부 및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조금단체 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조금단체는 거출금 납부 및 수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거출금을 대납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납기관”이라 한다)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농수산업자의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여야 하고, 대납 후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수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자조금단체는 회원에게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직접 발송하거나 공시 등의 방법으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방법 등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납부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의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먼저 납부한 거출금만큼 감액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자조금단체가 회원 대신 거출금을 납부하는 대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거출금 납부 의무와 대납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고 있음.

첫째,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스스로 정관에서 거출금 납부 면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를 통해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에 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구체적인 납부 방법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세부적인 납부 방법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도의 유연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납부 방법을 위반한 경우 거출금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는 이를 법률에서 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과 달리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거출금의 대납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거출금 납부의 편의성이 증진되고, 자동적인 거출금 납부에 따라 거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농산물 품목 20개 의무자조금단체 중 6개 자조금단체만이 대납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납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자조금단체가 품목별 특성에 맞게 대납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대납기관의 대납 시 회원의 거출금 납부 의무가 이행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대납기관을 활용하는 의무자조금단체 현황 】

연번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거출방식
1	(사)한국인삼협회	인삼농협	■ 농가가 경작신고서 작성 후 인삼농협에 제출하고 인삼농협에서 거출금 부과
2	(사)한국배연합회	농협	■ 농협에서 배 봉지 구매 시 거출 * 일부 영농법인, 농가는 자체 구매내역을 연합회에 자진 신고 후 납부
3	(사)제주감귤연합회	농협 (공제) *농협 출하시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농협 계통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농협 미출하 농가는 매출 서류 제출 시 고지서 발급
4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농협 *농협 출하시	■ 생산자단체는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농협에서 포장박스 구매 시 거출 * 미구매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기준 고지서 발급
5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① 도매시장 (공제) ② 농협	■ 공영 도매시장 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경기도 일부 지역(고양시, 파주시) 농가는 한국화훼농협에서 면적기준 거출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배면적 서류를 협의회에 제출 시 고지서 발급
6	(사)한국난재배자협회	공판장 (공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재배분수신고서 기준 고지서 발급 ■ 미거출 농가 대상 공판장 출하 시 정산금액에서 공제 ■ 전시 판매장은 판매 실적 기준 부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넷째, 윤준병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정관 기재사항에 거출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조금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나,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 거출금 미납자 등에 대한 지원 제한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따르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유통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유통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유통·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거출금 납부 의무의 이행 유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제한을 규정하되,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첫째, 제정안은 지원 제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거출금 납부 의무 이행을 보다 촉진하여 자조금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둘째, 윤준병의원안은 자조금단체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생산·유통 자율조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아. 거출금의 수납위탁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거출금의 수납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0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32조(거출금의 수납위탁) ①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조금의 수납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③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	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업자 및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의무자조금관리 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⑤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 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 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회원 또는 대납기관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거출금은 자조금 단체가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납기관은 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출금의 수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거출금)의 수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농협·도매시장 등을 통한 출하 시에 정산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거나, 회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고 은행 등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출금의 수납이 위탁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거출금의 수납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되, 다음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첫째, 회원 또는 대납기관의 미납부 거출금을 자조금단체가 “의무”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재량”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자조금단체에게 강제징수⁴²⁾와 같이 거출금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의무이행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둘째, 수납기관의 납부기일 및 납부 지연 시 이자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법률에서 일괄 규정하지 않더라도 자조금단체와 수납기관 간 위탁계약 시에 약정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제도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2)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함(「행정기본법」 제30조제1항4호)

자. 과오납금의 환급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회원의 착오 등으로 납부된 과오납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9조(과오납금의 환급) 의무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는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농수산업자의 청구가 없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거출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환급) 자조금단체는 회원이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자조금단체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회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는 경우에도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 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수산업자가 거출금을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에 대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단체가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회원이 거출금을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에 대하여 자조금단체가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단체 폐지 등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취지로서 단순 자구정리 사항인 것으로 보임.

차. 자조금회계의 구분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거출금 및 정부 지원금 등으로 마련된 자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① 자조금단체의 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제27조에 따른 재원을 관리하고 일반회계는 그 밖의 수입을 관리하여 자조금 사업 또는 단체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용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의 구분)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자조금회계) ① 자조금단체의 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특별회계는 제27조에 따른 재원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 하고, 일반회계는 이월금과 자조금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로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 구분의 기준 및 회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계 구분의 기준 및 회계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출금이 단순한 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원활한 자조금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입한 준조세적 성격의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제정안들 또한 자조금단체가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① 송옥주의원안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회계 구분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② 윤준병의원안과 임미애의원안은 회계를 법률상 자조금의 재원이 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와 그 외 자금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음.⁴³⁾

43) 그런데, 제정안은 제27조에 따른 재원을 관리하는 회계를 특별회계로 지칭하고 있으나, 자조금 단체가 해당 재원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한 단체인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과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회계 구분 】

현행법	➡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	➡	<u>특별회계:</u> 제27조에 따른 재원을 관리	현행과 같음	<u>특별회계:</u> 제27조에 따른 재원을 관리
		<u>일반회계:</u> 그 밖의 수입을 관리		<u>일반회계:</u> 이월금 및 자조금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관리

※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재원의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보다 체계적인 회계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두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각각 동일한 성격의 재원을 계상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회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일반회계에 ‘그 밖의 수입 또는 자조금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재원인 ‘안 제27조에 따른 자조금의 재원⁴⁴⁾’에도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44)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안)

제27조(자조금의 재원)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4. 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밖의 수익금'이 포함됨.

둘째, 임미애의원안과 같이 이월금을 일반회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특별회계에서 관리되는 재원이라도 발생한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아 이월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거출금 등 재원과 기타 재원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카. 공시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공시) 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⁴⁵⁾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단체의 공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시

4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대상에 ‘자조금 관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자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44조제2항제5호에서는 안 제35조에 따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공시 제도 위반자에 대하여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령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게 ①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②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⁶⁾

46)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의 공시)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직전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공시하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자금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공시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제4장: 보칙

가. 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제정안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 등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8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관련 통계등을 제공하여야 한	제4장 보칙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의 현황, 경작신고,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이를 제공하	제4장 보칙 제37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의 현황, 경작신고,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이를 제공하	제4장 보칙 제36조(통계 등의 작성·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의 현황, 경작신고,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이를 제공하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	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계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	④ 제1항에 따른 통계등의 작성·관리 및 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통계 및 농수산업자 현황 등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매년 이를 자조금단체 등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통계 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정보의 이용 요청을 규정하고, 통계 등을 작성·관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법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통계 및 농업인등의 현황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정보의 이용 요청,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농어업경영정보 등의 이용

제정안은 자조금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한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8조의2(농어업 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에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개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재배 면적을 말한다)	제37조(농어업 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대의원 선출과 회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	제38조(농어업 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하여 회원 명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등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및 경영체 등록	제37조(농어업 경영정보 등의 이용) ① 자조금단체는 임원·대의원 선출과 회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업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대의원 선출과 해당 농수산물에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한 자료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번호를 말한다) 및 농업법인의 정보(법인 명칭, 주소, 연락처, 농지의 소재지 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채배지의 주소 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 법인명)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를	번호를 말한다) 및 농업법인의 정보(법인 명칭, 주소, 연락처, 농지의 소재지 와 면적 및 경영체 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제공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조금단체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으로만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대의원 선거 및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를 사용하여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사용하여야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이를 사용하여 하며, 회원 명부 작성이 끝나는 즉시 제공받은 개인정보 및 법인의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에 제공된 개인정보의 파기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은 원칙적으로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⁴⁷⁾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⁴⁸⁾

이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① 성명, ② 주소, ③ 연락처 및 ④ 재배면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에 관한 예외조항을 규정하여,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대의원 선출 및 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자조금단체가 회원 명부 작성을 위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제공할

47)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4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있도록 하되, 제공 가능 정보를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제정안에 따른 제공 가능 농어업경영정보 】

연번	현행법	➡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1	성명	➡	성명, <u>법인명</u>	성명, <u>법인명</u>	성명, <u>법인명</u>
2	주소	➡	주소	주소	주소
3	연락처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4	재배면적	➡	<u>농지</u> 면적	재배지 면적	<u>농지</u> 면적
5	<신 설>	➡	<u>농지 소재지</u>	<u>재배지 주소</u>	<u>농지 소재지</u>
6	<신 설>	➡	<u>생년월일</u>	<u>생년월일</u>	<u>생년월일</u>
7	<신 설>	➡	<u>경영체 등록번호</u>	<u>경영체 등록번호</u>	<u>경영체 등록번호</u>

※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제정안은 제공 가능 정보에 법인명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업경영정보의 정보 주체에 농업법인이 포함되고 있음에도 별도로 법인명을 규정하지 않은 채 성명만을 규정하는 현행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둘째, 윤준병의원안과 임미애의원안은 재배면적을 제공하도록 하는 현행법 및 송옥주의원안과 달리 농지 면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 명부 작성의 목적인 거출금 산정 등을 위하여는 전체 농지가 아닌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만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농지(재배지)의 소재지, 생년월일 및 경영체 등록번호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조금단체

가 실제 채배 현황을 파악하거나 거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제공 가능한 정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송옥주의원안을 제외한 제정안은 정보주체를 농업인등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농업인등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닌 생산자단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⁴⁹⁾ 타당한 것으로 보임.

넷째, 제정안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단순 명부 작성에서 거출금 산정 및 부과 등을 위한 회원 명부 작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보 이용 목적을 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를 금지한 「농어업경영체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생산자단체가 당연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생산자단체는 동 법률에 따른 정보등록 의무가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4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육성·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조성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제39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설치 지원 2. 자조금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제38조(자조금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전담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조금 신규 조성 지원 2. 자조금 운용 가이드라인 개발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6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 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거출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 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8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 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보급 3. 자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지원 4. 자조금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5. 자조금 인식개선을 위한 통합 홍보 6. 교육·홍보 등 분야별 매뉴얼 개발 7. 자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역량 강화 지원 8. 제36조에 따른 통계등 작성·관리 및 제공 9. 그 밖에 자조금 단체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③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에 관한 별도의 지원기관을 규정하지 않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는 자조금단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2019년부터 그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현재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인 농협경제지주는 2022년에 지정된 이래로 계속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통합 콜센터 운영, 홍보 및 교육 등 자조금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수행 업무 개요 】

 법 개정 지원을 통한 자조금 역할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의무자조금의 명칭, 설치이유, 목적 개정 지원	 의무자조금 설치 지원을 통한 신규 자조금 단체 육성 주요 사업내용 · 임의자조금단체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및 개편을 통한 자조금 운영 효율화 주요 사업내용 · 통합관리시스템 확대 및 개편 추진	 통합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 주요 사업내용 · 자조금 통합 콜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
 홍보 및 농업인 설명회 추진을 통한 자조금 인식 제고 주요 사업내용 · 자조금 제도 인지도 및 거출률 제고를 위한 홍보 진행 · 자조금 인지도 제고를 위한 농업인 등 권역별 교육 확대	 자조금 교육 및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한 자조금 단체 사업 활성화 주요 사업내용 · 자조금 단체 관계자 및 유관기관 업무설명회 진행 · 정보교류를 위한 자조금 단체 · 품목 관계자 워크숍 진행 · 자조금단체 지도 및 점검 지원 · 자조금 관련 당면현안 대응 지원

※ 자료: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자조금.kr)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자조금지원(3031-325)” 사업에서 매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0억원을 보조하고 있음.

【 2025년 자조금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	13,110	13,110	-	13,110	13,110 [13,042]	-	-	16,045
-자조금단체	12,110	12,165	-	12,165	12,165 [12,157]	-	-	15,045
-지원센터	1,000	945	-	945	945 [885]	-	-	1,0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Ⅱ-1)”

제정안은 이와 같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⁵⁰⁾

다만, 안 제39조제3항의 운영 경비 지원 규정은 지원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나, 제정안은 지원센터 운영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부 기관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의 경우에도, 소관 부처의 장관이 특정 센터·기관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후, 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센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유사 입법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7조(바이오가스센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2.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3.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관리
4.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의 지원·관리
5.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모니터링 및 운영 컨설팅 등 지원
6.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관리
7. 바이오가스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인력·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0) 이 경우, 이미 2024년에 발의되어 농림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세 건의 제정안은 모두 이미 외부에 존재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서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제정안과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임상시험 기반 조성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기반 구축 등 국내외 임상시험 관련 지원 사업
2.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3.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인증 및 지원
4.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라.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농수산 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자조금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40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자조금단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39조(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자조금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현행 농수산물 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경우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경우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거출금 납부 의무만을 규정할 뿐, 별도의 제도적인 거출금 납부시스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거출금 납부 과정에서 각 자조금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중복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비효율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거출금 납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의 체계·자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9조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자조금단체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약칭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나, 약칭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요청을 받은 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39조제3항의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방식과 관련하여 윤준병의원안은 대통령령, 송옥주·임미애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는 차이가 있음.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협경제지주가 운영 중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의무거출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부 자조금단체⁵¹⁾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이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거출금 납부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상황임.

51) 키위, 참외, 양파, 마늘, 배, 복숭아, 뽕은감 자조금

마. 지도·감독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 자조금단체를 지도·감독하고 ②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보고·자료 제출 등의 명령과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32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임의자조금위원회,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제40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	제41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감독하기 위하여 자조금단체, 자조금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	제40조(지도·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지도·감독하며 자조금단체,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이하 “자조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에 출입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자조금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 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지도·감독 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지도·감독 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지도·감독 에 필요한 사항 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 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자조금단체·대납기관 및 수납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이에 준하여 지도·감독 및 검사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과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이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조금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농산물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자조금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 또는 자조금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이 법에 따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대상을 현행법에 준하여 규정하되,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청장을 추가함.

현재 농산물 중 밤, 버섯 등 임산물에 관해서도 자조금이 조성 및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산물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산림청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 위탁 대상을 aT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제정안에 따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또는 자조금단체로 변경함.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자조금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⁵²⁾하는 전담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업무 위탁 대상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이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정하는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의 자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있는 수탁자를 업무의 위탁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자조금단체를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그 관리 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자조금단체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52)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의 농림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다른 세 건의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일반적인 수급조절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한다면 이는 해당 업무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의 위탁 규정 또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⁵³⁾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일반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신설된 통합특별시(전남광주)의 장을 권한 위임 대상에서 누락하고 있으므로, 안 제41조 제1항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

53)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제5장: 벌칙

가. 벌칙 및 양벌규정

제정안은 ① 비밀 누설 등 금지 의무와 ② 자조금 회계의 구분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3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5장 벌칙
제34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② 제34조를 위	② 제34조를 위	② 제34조를 위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제36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자조금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자조금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다. 다만, 자조 금단체가 그 위 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자조 금단체가 그 위 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자조 금단체가 그 위 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자조 금단체가 그 위 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 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은 ① 비밀 누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② 자조금 회계의 구분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규정하고, 이에 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은 농산자조금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단순히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만을 수정하고 있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과태료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제1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1조제3항(제27조제2항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을 폐지한 자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단체를 해산한 자	자조금단체의 해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조금단체를 해산한 자	
4. 제21조제7항 전단(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1. 제4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5.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3. 제28조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의	6.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	5.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	4.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출금 수납의뢰를 거부하거나 거출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무거출금 수납 업무를 중단한 자	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5. 제31조제1항 을 위반하여 평가결과에 대 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	1. 제16조제2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 하여 해당 품 목을 생산·유통 한 자	2. 제17조를 위 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 유통한 자	1. 제18조를 위 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 유통한 자	1. 제17조를 위 반하여 해당 품목을 생산· 유통한 자
2. 제19조제1항 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관 리위원회가 결 정한 의무거출 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	3. 제3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한까지 거출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2. 제30조를 위 반하여 자조금 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기 한 이내에 거 출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자조금단체가 결정한 거출금 납부일자 이내 에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자		한 자
3. 제19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대납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회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1.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의3. 제28조의2 제2항을 위반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5.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행 농수산자조금법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하여 제공된 개인정보를 즉 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공된 개인정 보 및 법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 한 자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아니 한 자	제공받은 개인 정보 및 법인 의 정보를 즉 시 파기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제1항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7. 제40조제1항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1항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6. 제40조제1항 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 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8. 제40조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 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7. 제41조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 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7. 제40조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 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이 부과·징수 한다.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이 부과·징수 한다.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이 부과·징수 한다.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 사항을 대부분 따르며,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모두 대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다만, 대납기관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안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임미애의원안은 두 제정안과 달리 총회의 의결에 따른 자조금 단체의 해산 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해산시키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자조금단체의 해산 과정에서 전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과태료 사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윤준병의원안은 자조금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운용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현행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며 자조금 운용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넷째, 현행 농수산물조금법과 제정안은 모두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상향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⁵⁴⁾은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⁵⁵⁾

54)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도록 하되, 다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5)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부칙

가. 시행일

제정안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 농산물에 관한 자조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자조금단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범자인 농업인들이 제도 개편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려는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은 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안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는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거출금의 납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고 있거나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어 거출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영세 농수산업자에게 거출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⁶⁾ 제정안 또한 경영규모가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들에게 거출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⁵⁷⁾

56)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무거출금의 납부)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납부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영세 농수산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57) 윤준병의원안

제30조(거출금의 납부) ①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

그런데, 농업인등의 경영규모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종전 법률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었더라도 이 법 시행 시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제정안은 ① 이 법 시행 당시 면제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와, ②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출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윤준병의원안과 임미애의원안에서는 ‘개정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해 법률안은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므로 개정규정 대신 ‘규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음.

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은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안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3조(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행 농수산물조금법 제29조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 단체로 하여금 농수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 따라 농산물조금 제도에 관한 사항이 이 법을 통하여 규정되고 현행 농수산물조금법에서 농산물 품목에 관한 제도가 삭제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농산물 품목의 농수산물조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의 반환 근거 역시 삭제됨.

이에, 제정안은 이 과정에서 기존 농산물 품목 농수산물조금과 관련한 과오납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적용례를 두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라. 일반적 경과조치

제정안은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 신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를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4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한 고시·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제도를 이 법에 따른 농산물자조금 제도로 분리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이 과정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 제도와 제정안에 따른 농산물자조금 제도 사이의 연속성 측면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행위를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행위를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보도록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종전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행위에는 수산물자조금에 대한 행위가 혼재되어 있으며, 수산물 품목의 자조금은 여전히 기존 법에 존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 대상을 종전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다른 행위 중 농산물 품목의 농수산물자조금에 관한 행위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윤준병의원안은 행정기관의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⁵⁸⁾⁵⁹⁾.

58) 참고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었음.

법률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59) **법률 제1887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마.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제정안은 자조금단체의 근거 규정을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미 설립된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5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또는 제22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조금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 설립등기를 하여야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단체(이하 “기존 자조금단체”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존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 설립등기를	제5조(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또는 제22조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존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 설립등기를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 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자조금단체는 설립 등기일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재산·직원 및 회원(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존 자조금단체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명의로 본다. ⑥ 자조금단체의 설립 당시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하여야 한다. ③ 기존 자조금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설립 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자조금단체는 설립 등기일에 기존 자조금단체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직원 및 회원(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존 자조금단체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명의로 본다. ⑥ 자조금단체의 설립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기존 자조금단체는 제2항에 따른 설립 등기를 마치면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자조금단체는 설립 등기일에 기존 자조금단체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직원 및 회원(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기존 자조금단체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명의로 본다. ⑥ 자조금단체의 설립 당시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라 설립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총회의 감사 및 대의원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및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감사는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경우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조금단체의 설립 이전에 기존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기존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	설립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총회의 감사 및 대의원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및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감사는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경우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조금단체의 설립 이전에 기존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기존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	설립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총회의 감사 및 대의원은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으로 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 이사 및 임의자조금위원회의 감사는 자조금단체의 정관에 따른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 각각 그 자조금단체의 회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이 경우 회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자조금단체의 설립 이전에 기존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기존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조금단체가 행한 행위 또는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여진 행위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기존 자조금단체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으로 본다.	여진 행위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기존 자조금단체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본다.	여진 행위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기존 자조금단체에 출연한 출연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본다.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가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종전의 자조금단체에게 일정 기간(의무 1년, 임의 1년 또는 3년) 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② 인가를 받은 경우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해당 설립등기에 따라 종전의 자조금단체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며, 종전 자조금단체의 권리·의무·재산·직원·회원을 승계하도록 함.

또한, ③ 종전 자조금단체의 임원이 이 법에 따른 임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간주하고,

④ 그 외 종전 자조금단체에 관련한 행위와 정부 출연금을 이 법에 따른 행위와 정부 출연금으로 보려는 것임.

【 제정안의 자조금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요약 】

항	경과조치 내용																			
1	기존 자조금단체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가받을 것 <table><tr><th>구분</th><th>기간</th></tr><tr><td>의무자조금단체</td><td>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td></tr><tr><td>임의자조금단체</td><td>윤준병, 임미애의원안: 이 법 시행 후 <u>3년 이내</u> 송옥주의원안: 이 법 시행 후 <u>1년 이내</u></td></tr></table>	구분	기간	의무자조금단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임의자조금단체	윤준병, 임미애의원안: 이 법 시행 후 <u>3년 이내</u> 송옥주의원안: 이 법 시행 후 <u>1년 이내</u>													
구분	기간																			
의무자조금단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																			
임의자조금단체	윤준병, 임미애의원안: 이 법 시행 후 <u>3년 이내</u> 송옥주의원안: 이 법 시행 후 <u>1년 이내</u>																			
2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																			
3	제2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설립등기를 한 경우 기존 자조금단체의 해산 간주																			
4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자조금단체는 모든 권리·의무·재산·직원·회원을 승계																			
5	제4항에 따라 승계한 권리·의무 관련 기존 자조금 단체 명의를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 명의로 간주																			
6	종전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의 임원을 아래와 같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의 임원으로 간주 (임기:잔여기간)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이 법(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th></tr><tr><th>회장</th><th>이사</th><th>감사</th><th>대의원</th></tr><tr><td>의무자조금단체</td><td>대표자</td><td>이사</td><td>총회 감사</td><td>대의원</td></tr><tr><td>임의자조금단체</td><td>대표자</td><td>이사</td><td>임의자조금위원회 감사</td><td>-</td></tr></table> ※ 주: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상 임의자조금단체에는 대의원회가 없음	구분	이 법(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의무자조금단체	대표자	이사	총회 감사	대의원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이사	임의자조금위원회 감사	-
구분	이 법(제정안)에 따른 자조금단체																			
	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의무자조금단체	대표자	이사	총회 감사	대의원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이사	임의자조금위원회 감사	-																
7	기존 자조금단체에 행한 행위 또는 기존 자조금단체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를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에 관한 행위로 간주																			
8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자조금단체에 출연한 출연금을 이 법에 따른 출연금으로 간주																			

※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된 현재의 농수산물자조금단체들이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로 변경되어야 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부칙 제5조제1항은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현행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전체 자조금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에는 수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도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존 자조금단체가 설립인가 시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설립인가 시에는 정관 외에도 자조금단체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자조금단체라 하더라도 재차 설치 목적, 재원 확보 방안 및 대표성⁶⁰⁾ 등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립계획서 작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의 경과조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폐지절차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과 함께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농산물 품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그 조직 해산과 관련된 근거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에 존재하더라도, 자조금의 폐지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됨.

60) 참고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서 설립계획서에 대응되는 것은 설치계획서인데, 현행법은 자조금 설치 목적, 재원 확보 방안,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안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 자조금단체는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 제21조제7항·제8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폐지절차⁶¹⁾를 이행하도록 추가적으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제정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자조금단체를 “기존 자조금단체”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이 법에 따른 자조금단체와 혼동의 여지가 있으므로, 부칙 전반에서 이를 농수산물자조금단체로 별도 정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자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무자조금의 폐지) ⑦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경우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지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명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⑧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은 정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임의자조금의 폐지)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 보고,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총회”는 “임의자조금위원회”로,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은 각각 “임의자조금단체”로, “의무거출금”은 “임의거출금”으로 본다.

바. 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은 자조금의 근거 규정을 종전의 농수산자조금법에서 이 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미 설치된 자조금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6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6조(자조금에 대한 경과 조치)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가 종전의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치한 농수산자조금 중 농산물에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6조(자조금에 관한 경과 조치) 기존 자조금단체가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존 자조금단체에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6조(자조금에 대한 경과 조치) 기존 자조금단체가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종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기존 자조금단체에 설치된 농산물자조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으로 본다.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농산물에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을 이 법에 따른 농산물자조금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현재 조성·운용 중인 농산물자조금의 법적 근거가 종전의 농수산자조금법에서 제정안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자구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송옥주·임미애의원안이 사용하고 있는 주어인 “기존 자조금단체”가 지칭하는 바가 모호하므로, 윤준병의원안과 같이 설립등기를 마친 자조금단체로 주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윤준병의원안에는 “농산물에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의 문구⁶²⁾를 고려할 때 이를 “농산물 품목에 설치된 농수산물자조금”으로 수정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2)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농수산물자조금의 설치)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물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물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의 농수산물조금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7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형법」 제1조는 범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하여 행위 시 법 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⁶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역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 행위 시 법 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⁶⁴⁾

63)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6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

제정안은 이와 같은 처벌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행위 시 법 주의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닌 종전의 농수산물조금법에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아. 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은 종전의 농수산물자조금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이 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8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부 칙	부 칙	부 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산물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 「밀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산물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정안은 농산물 품목 자조금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함에 따라,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따른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두 법률을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 경우,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57조제2항제1호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⁶⁵⁾ ② 「밀산업육성법」 제10조제4호는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으로서,⁶⁶⁾ 모두 수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21031호)⁶⁷⁾이 2026년 8월 27일 시행예정이므로,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66) 「밀산업 육성법」

제10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조성 지원 등 소비기반 조성

67) 법률 제2103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수매 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및 수확기 산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조사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기준가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제정안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시행예정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률 제21031호 농안법 (’26. 8. 27. 시행예정)	수 정 의 건 (안)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 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 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이 경우 「 농수산물자조금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19조 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 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출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는 지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농산물자조금 조성·운 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 률 」 제17조에 따른 경작·출하 신 고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거 출금의 납부----- ----- -----.

※ 주: 수정의견(안)은 제정안에 따른 법률의 제명 및 조 번호를 윤준병의원안과 같이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한편,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서도 역시 현
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곡 및 채소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제16조
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 지급비율을 제16조의4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
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납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출
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생산자에 대하여는 지급비율을 달
리 정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익 일부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01호)⁶⁸⁾이 2026년 8월 28일 시행예정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시행예정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함께 의결이 필요한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개정사항(제명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법률 제21401호 농안법 (’26. 8. 28. 시행예정)	수 정 의 건 (안)
제42조의4(<u>의무자조금에</u>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 <u>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 」 제7조제3호에 따른 <u>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u> 납부할 수 있다.	제42조의4(<u>자조금에</u>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 <u>농산물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u> 」 제27조제3호에 따른 <u>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또는 「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u> 납부할 수 있다.

※ 주: 수정의견(안)은 현행 농수산물자조금법의 제명을 “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과, 제정안에 따른 법률의 제명 및 조 번호를 윤준병의원안과 같이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68) 법률 제2140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정안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조금법을 인용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9조).

윤준병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미규정)	부 칙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제정안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칙으로, 관련 법률의 외형상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음.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법률의 해석상 혼란과 이해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통하여 최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되, 보충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⁶⁹⁾

제정안은 이미 안 부칙 제8조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조금법을 인용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보충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

69)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24, p.917.